

제25차 WTO/SPS 회의 참석결과 보고서

농림부 통상협력과 / 김수현

서론

- SPS협정(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은 WTO 협정문의 부속협정으로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관세나 물량제한 이외에도 위생·검역 요건이라는 SPS조치에 의거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특성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
- 스위스 제네바에서 SPS회의가 정기회의 3차례 및 특별회의 등이 매년 개최됨
- 2002.11.5 - 11.8 스위스 제네바 제25차 WTO/SPS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 제네바대표부 유병린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본인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지우 사무관), 국립식물검역소(신현경 주사보), 복지부(정영숙 주사, 신성균), 외교통상부 관계관(김희상 서기관)이 참석하였다

본론

- 회의 안건으로는
 - 1) 의제채택, 2) 협정의 이행
 - (a) 회원으로부터의 정보
 - i) 회원국의 활동
 - (b) 특정 교역 관심사
 - i) 신규 사안
 - ii) 기존 제기 사안
 - (c) 접수된 특정 통보문에 대한 검토
 - (d) 투명성규정 운용과 관련된 기타사항
 - 3) 개도국과 SPS협정
 - (a) 개도국 특별 및 차등대우 조항의 적용
 - (b) 무역협상위원회(TNC)보고서

4) 동등성 - 제4조

- (a) 비공식회의 결과 보고
- (b) 회원국 경험 정보
- (c) 관련 국제기구의 경험 정보
- (d) 합의문의 조항 검토(제5, 6, 7항)

5) 기술지원 및 협력

- 6) 국제규격의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 7) 중국의 SPS 협정이행 평가
- 8) 읍서버 기구 작업으로부터 제시된 사항 및 읍서버 지위 요청
- 9) 일반이사회 보고서 채택
- 10) 기타 안전 및 차기회의 일정

- 주요 논의 내용

“중요조건안보와 바이오테러리즘” 설명회(11.6)

○ 미국은 동 법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

- 대상품목 : 미국 FDA 소관 식료품 및 의약품 등(육류 및 알가공품 제외)
 - ※ 유제품, 사료, 동물용 의약품, 인삼, 라면, 간장, 김치, 과채류 등이 해당됨
- 주요내용 : 1) 모든 국내의 식품제조공장/취급업소의 등록 의무, 2) 식품제조·가공 기록 보관 및 FDA의 접근성(서면, 현지조사 가능), 3) 재배업자, 제조업자 혹은 운송업자에게 선적전 사전 통보 의무 및 4) FDA의 억류(detention, 최대 30일) 권한부여
-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 : 1) 2002.6.12 법안 통과, 2) 2002.9.9 수출을 위한 수입식품관련 세부지침 개발 3) 2002.12.8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한 국외 생산시설 등록, 4) 2003.10.12 최종 규정 개발, 5) 2003.12.12 식품공장 등록/법령 발효.
- 관련 Website : <http://www.fda.gov/oc/bioterrorism/bioact.htm>

2) 동등성 규정관련 비공식회의(11.6)

- 의장은 도하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동등성 관련 논의 진척사항을 의장 책임하에 무역협상위원회(TNC)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등성 협정(SPS협정문 제4조)관련 결정문(G/SPS/19)

의 제5, 6항에 대한 권고 채택 및 제7항의 구체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보 양식을 논의할 것을 제안

※ SPS협정문은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조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본문은 회원국의 권리·의무,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 인정, 위험평가, 질병비발생 지역개념 인정, 투명성 보장 등 일반원칙과 개도국 특별대우 등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
- 부속서는 협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투명성 이행절차, 통제·검사 및 승인절차를 설명

【동등성 관련 결정문의 구체화】

- 제23차 SPS위원회에서 합의된 일정계획(G/SPS/20)에 따라 동등성 결정문(G/SPS/19)의 제5, 6, 7항에 대하여 논의
- 제5항(신속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제안한 문서(G/SPS/W/121)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EC등의 찬성으로 제안된 반대로 채택 예정임을 확인함.
-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는 세부 신속 수입절차 포함문제(G/SPS/W/123)를 추가제안 하였으나 위원회와 자매 국제기구(OIE, IPPC 및 CODEX)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 및 의견이 회의 임박시점에서 제출된 점 등의 문제를 들어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 동등성 결정문 제5항에 대한 권고내용

- 관련제품에 대한 직접적 무역경험이 있는 경우 수입국은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논의중인 CODEX의 문서, OIE의 지침(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경험이 중요하며, 이들 국제기준 제정기구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지침개발을 촉구
- IPPC에 동등성 평가 지침 개발을 촉구함
- 제5항의 세부 신속 수입절차 포함문제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

※ IPPC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도모

- ※ OIE :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 OIE), 동물질병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도모
- ※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odex),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

- 제6항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권고를 제안(G/SPS/W/122)하였음을 설명함
 - 이에, 미국은 CODEX에 대한 동등성 평가 지침 개발에 대한 권고를 모든 자매국제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등 지지) 문구를 수정하여 공식회의에서 다시 제안키로 함.

※ 제6항에 대한 권고내용

- 동등성 인정 요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동등성 인정 요청에 의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SPS협정(제2조) 위반.
- 동등성 인정 요청은 수입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 그러나, 동등성 인정을 요청한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요청되는 경우, 수출국은 이러한 조치가 동등성 인정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SPS협정에 의한 수입제한 사유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사무국은 CODEX, IPPC 및 OIE에서 논의중이거나 준비중인 동등성 평가 지침 마련 작업을 독려함

- 제7항과 관련하여 호주는 동 7항은 SPS협정문(4조)과 달리 동등성 평가시 수입국에 적정보호 수준의 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적정보호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한 비공식문서를 제출
 - 이에 12월 개최되는 CODEX 식품수출입인증분과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회의 전에 사무국은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차기 비공식·공식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함.

※ 동등성 협정에 대한 결정문 제7항의 내용

- 동등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때, 수입국은 수출국이 취한 보호조치가 자국과 다를 수 있음을 감안, 수출국에서 제공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비교·검토하여 자국의 위생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적정보호수준과 동등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보 양식(개도국 특별대우조항 반영문제)】

- 투명성 관련 캐나다는 통보양식 제안서(G/SPS/W/127)에 대하여 SPS조치를 도입하는 시작부터 개도국 특별대우조치(S&D)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관심있는 국가의 요청, 양자협의를 거쳐 S&D 적용 도입시 이를 추가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 이에 이집트, 인도, 필리핀 등은 통보문에 S&D box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려, 양자협약 기간의 단축 등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미국은 이를 문서로서 제안해 줄 것을 요청.

3) 양자협의

□ ASEM국가간 비공식협의 (11.7 오후)

- 우리나라, EC 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표제회의에서 EC는 아시아 국가들의 SPS 관련 기술협력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
 - 태국 및 필리핀 등이 SPS 위원회에 기술협력을 요청한 바 있음을 언급하고 EC의 기술지원을 요청함. (태국은 가금육 잔류수의약품 문제를 언급)
- EC는 태국, 우리나라 등이 관심을 표명한 3-MCPD의 위해도 평가와 관련, 동 평가가 지난 10월에 완료되었음을 설명하고 조만간 관련 위원회에서 최대일일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잔류허용치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변화가 있는 경우 통보할 예정이라고 언급.
- 필리핀이 검토중인 식육 및 유제품에 대한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증명서 제출 요건에 대하여 EC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많은 회원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
 - 필리핀은 동 조치의 이행개시는 '03.1.1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02.11.18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임을 설명.
- 태국은 EC가 요구하는 수산물가공품(참치캔 등)에 대한 GMO 증명서의 발급에 기술적 어려움을 있음을 제기



- EC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등에서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외에 EC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한 바, 태국은 수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 대두유에 대해 GMO 증명서가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술협력을 요청.

4) SPS위원회 공식회의(11.7-11.8)

1. 협정의 이행

①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화 현황과 관련, 지난 2002. 5.2일부터 6.23일까지 총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8월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구제역이 완전히 근절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언급하고, 지난 10.4일 OIE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 재인정 요청을 하였음을 설명
- 아르헨티나도 자국내 지난 9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이미 OIE에서 남위 42도 이하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인정받았고,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2차례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설명
- 미국은 6월 제정된 Biosecurity Act와 관련하여 FDA 소관 품목에 대하여 1) 모든 식품제조 공장/취급업소의 등록 의무, 2) 식품제조·가공 기록 보관 및 FDA의 접근성, 3) 선적전 사전 통보 의무 및 4) FDA의 억류(detention)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 미국, 칠레 등의 질의에 대하여 아직 세부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국 등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임을 설명.
- 호주는 OIE 등의 국제 전문가와 함께 대규모로 구제역 모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보고할 것임을 보고.
- 기타 칠레는 자국의 regionalization 및 고병원성 avian influenza, 대만은 자국의 구제역 근절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

② SPS관련 특정교역 관심사 논의

i) 신규사안

- * EC는 일본측의 식품첨가물 제도와 관련, 일본측이 CODEX를 비롯, 다수국가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미국 지지)
 - 우리나라는 일본측에 폴리솔베이트를 식품첨가물로 인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별도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음
 - 일본은 일본내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도 EU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새 정책을 도입하여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positive list로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본후생성에 제기할 것을 권고함.
- * 중국은 일본의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투명성 조항위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이에 우리나라 역시 관심을 표명하고 지난 9월초 일본측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
 -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바, 우리측은 부적합율 5%의 근거 및 부적합율이 높은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금지조치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 우려사항을 전달

ii) 기존제기 사안

- * 캐나다와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EC의 지역별 광우병 위험평가결과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 양자협의를중임을 보고
 - EC의 광우병 발병위험평가에 의하면 미국 및 카나다는 2등급 국가
- * 아르헨티나는 인도네시아의 구제역 관련 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 양자협의를 통해 신선우유를 제외한 모든 유가공품 해제에 합의예정
- * EC는 구제역관련 수입금지를 아직 해제하지 않은 멕시코, 호주 등에 대하여 조속한 해제요청

iii) 특정 통보문에 대한 논의

- * 미국은 중국의 식육에서의 병원성 대장균 비검출 요구가 과도함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개정을 요구
- * 우리나라, 캐나다, EC,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필리핀의 HACCP 인증제도 도입 중 제3자 검사기관의 정의, 증명서 첨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필리핀측은 비록 HACCP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라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차 기관에 의한 증명서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의견수렴기간(11.18)이 끝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심국가와는 양자협의를 할 것임을 설명

iv) 투명성규정 운용과 관련된 기타사항

- * 캐나다, 미국 등은 중국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하고 적기에 의견을 제출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자, 중국은 통보절차와 관련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언급함.
- 멕시코는 중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SPS 협정에 규정된 의견수렴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차기회의에 이에 대한 논의할 것을 제안
- 중국은 차기회의시 2002년도 자국의 통보문 목록과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최소의견수렴기간 준수(60일) 여부 비교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2. 개도국과 SPS협정

① 통보양식의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S&D Box)추가

- * 의장은 위원회에 비공식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집트는 캐나다의 제안과 금번회의의 경과를 반영한 제안서를 차기회의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언급함.
- 캐나다의 제안에 따라 각국이 개도국 특별대우조치(S&D)로 고려되는 사례를 차기회의 전에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함.

② 무역협상위원회(TNC) 보고

- * 의장은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implementation issue(동등성 협정에 대한 결정문 구체화 작업 등)에 대하여 의장 책임하에 TNC에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금년도 논의결과를 상품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
- 아르헨티나는 내년에도 TNC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여부를 질의한바 사무국은 TNC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

3. 동등성 협정관련 논의

- * 의장은 비공식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과테말라는 berry류에 대한 멕시코와의 동등성 인정 현황을, CODEX, IPPC 및 OIE는 동등성 판정에 관한 지침마련의 진행사항을 보고

- * 제5항의 이행관련 사무국 제안문서는 아래 4항을 추가하여 채택.
 - 4. The Committee agrees to continue consideration of suggestions for further clarification of Paragraph 5 of G/SPS/19
- * 제6항의 이행관련 사무국 제안문서는 3항에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 채택.
 -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and the Int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ICPM) to the above clarification with respect to Paragraph 6 of the Decision on Equivalence, and requests that the OIE and the ICPM take this clarification into consideration in their future work on equivalence with regard to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 * 사무국은 상기 채택된 문서가 explanatory note 형태로 G/SPS/19에 첨부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4. 기술지원 및 협력

- * 사무국은 11.5일 개최된 세미나 결과 국제기구 및 지원국가 등의 상호 조정이 필요함을,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등의 국가는 맞춤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기타 CODEX, IICA 등은 기술협력 사례를 발표

5. 국제규격의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 * 미국은 국제규격 모니터링 의제에 대하여 가금육에 대한 avian influenza(AI) 국제규격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EC와 일본이 이에 대한 지지 발언
 - OIE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예정인 국제동물 위생규약위원회 및 내년도 총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

6. 중국의 SPS협정 이행평가

- * 미국, EC, 대만의 질의(G/SPS/W124, 125, 126)에 대해 중국은 SPS협정이행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답변대신 아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중국측 입장을 표명함

- 투명성과 관련, SPS National Enquiry Point를 지정, 운영중이며 WTO가입전 관련규정과 신규 규정 제개성시 이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WTO 통보, 회원국에 회람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
-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관련, 국내 규격, 법령 제정절차(6단계)를 소개하고 자국의 표준화법 제10조에 국내규격 설정시 국제규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
- 2005년말까지 국제규격 조화율을 75% 수준으로 올릴 예정임을 설명하고,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규격을 검토, WTO 규정에 일치되지는 규격은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
- 위험도 평가와 관련, 중국이 1990년대 초부터 식물관련 pest risk analysis 국제기준 제정에 관여하였으며, IPPC의 병해충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

7. 옵서버 기구작업으로부터 제시된 사항 및 지위요청

- * 옵서버 기구 인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EC등은 CBD(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옵서버 지위 부여에 찬성하였으나, 이집트는 일반이사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8. 기타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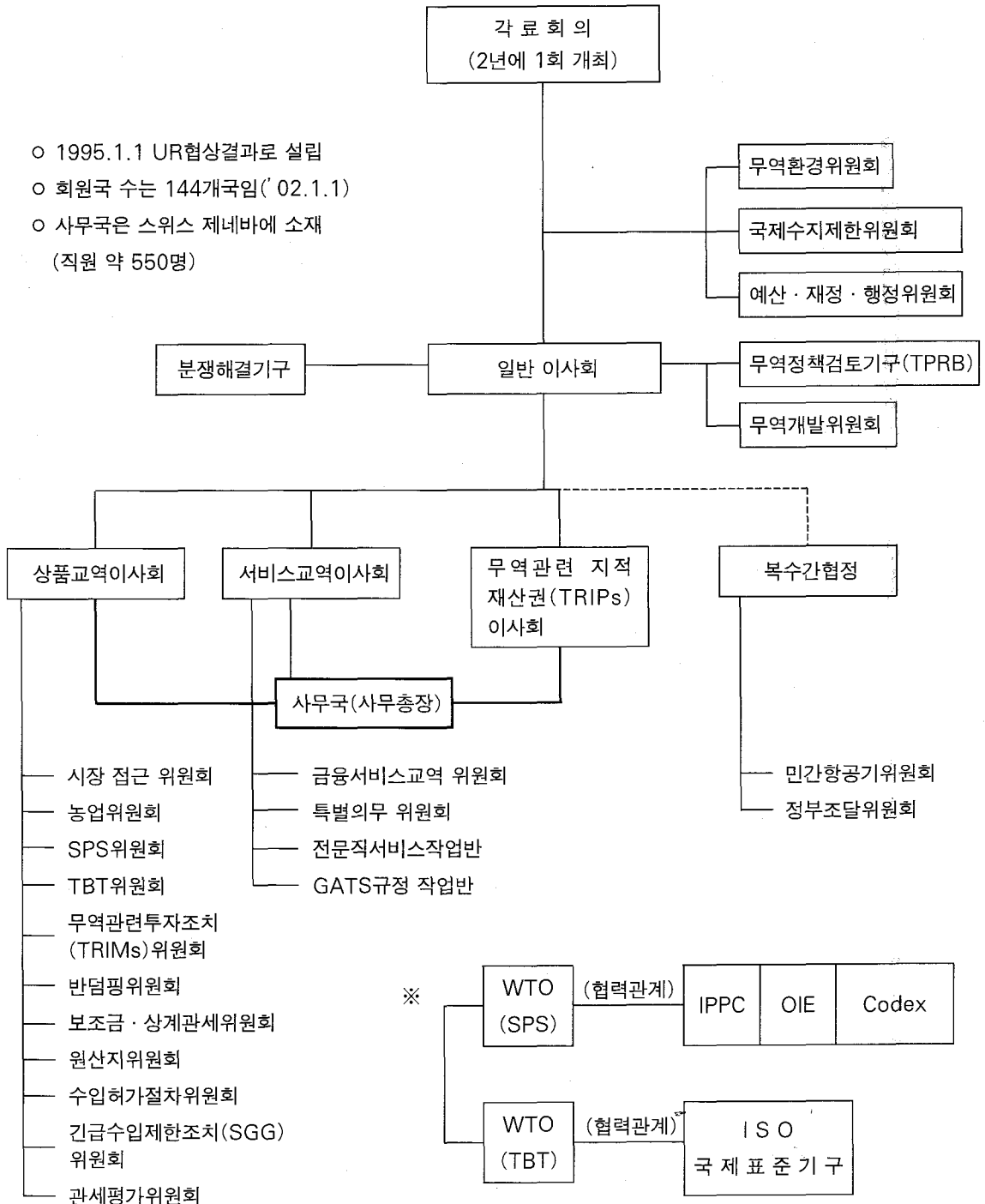
- * 사무국은 G/SPS/GEN/204/Rev.2(SPS관련 특정교역 관심사건 해결목록)를 차기회의 전에 약 37개 사례를 추가하여 update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은 해결사례가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9. 차기회의

- * 차기회의 : 2003. 3. 4(화) ~ 6(목)(비공식 1일 포함)개최 예정

□ WTO 및 관련 국제기구 조직 및 개요

- 1995.1.1 UR협상결과로 설립
- 회원국 수는 144개국임('02.1.1)
-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
(직원 약 550명)



<참고자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조건하의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내의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식물위생 상황의 개선을 희망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빈번하게 양자간 협정 또는 의정서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다자간 규칙 및 규율의 틀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내의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간에 조화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들이 수입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준수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접근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점에 있어서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제(b)항(Re.1)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Remark 1) 이 협정에서 제20조제(b)항이라 함은 제20조의 도입부도 포함한다.

제 1 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3.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1.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동 조치의 이용과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제(b)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조화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2.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 (Re.2)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 하지 아니한다.

(Remark 2) 제3조 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4.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보조기관,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 보호협약의 체계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및 지역기구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이들 기구내에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5. 제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조정한다.

제 4 조 : 동등성

1.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 5 조 :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2.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한다.
3.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수입국의 영토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한다.
4.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 규정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동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인간의 건강상 위협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6. 제3조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Re.3)

(Remark 3) 제5조 제6항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 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다.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8. 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의 수출을 제한 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동 해명은 동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제 6 조 :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1.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 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어느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을,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등을 고려한다.
2. 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의 효과성등의 요소에 근거한다.
3.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 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 7 조 : 투명성

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8 조 : 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부속서 3의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자기나라의 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 기술지원

1.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동 지원은 특히 가공기술, 국가 규제기관 설치를 포함한 연구 및 하부구조 분야에서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나라의 수출시장에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적응 및 합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훈련 및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한다.

제 10 조 : 특별 및 차등 대우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 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2.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 새로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단계적인 도입의 여지를 허용하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 품목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3.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동 국가의 재정, 무역 및 개발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권유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협의 및 분쟁해결

1.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이 협정에 따른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 관리

- 이 협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협정의 목적, 특히 조화와 관련된 목적의 증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 위원회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접근방법의 조정 및 통합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협의 및 연구를 후원한다.
- 이 협정의 관리를 위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확보하고 노력이 불필요 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 협약사무국등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이용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위원회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 목록에는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적용하거나 수입상품이 자기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하여 부합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특히 동 표준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등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사용의사를 표명한 후, 자기나라의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부속서 2의 절차에 따라 통보 및 해명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변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무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 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 특히 통보절차에 의해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회원국의 주도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비사용에 대한 해명의 근거를 포함하여 특정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관련된 특정사안을 조사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특히 이 협정의 이행으로 얻어진 경험을 고려하여, 이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3 조 : 이행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 14 조 : 최종 조항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동안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 회원국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그러한 적용이 방해받는 경우,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나라의 기존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제5조 제8항과 제7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동안 연기할 수 있다.